

〈丙子日記〉에 나타난 1630년대 후반의 民俗

朴 敬 伸

- | | |
|---------------------|---------|
| I. 서론 | 3) 주생활 |
| II. 丙子胡亂 직후의 전반적 상황 | 2. 冠婚喪祭 |
| 1. 정치적 상황 | 1) 관례 |
| 2. 사회적 상황 | 2) 혼례 |
| 3. 경제적 상황 | 3) 상례 |
| III. 〈丙子日記〉에 나타난 民俗 | 4) 제례 |
| 1. 衣食住 생활 | 3. 歲時風俗 |
| 1) 의생활 | 4. 기타 |
| 2) 식생활 | III. 결론 |

I. 서 론

문학 작품과 그 작품이 형성되던 시대의 사회상과의 사이에 얼마만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또 있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문학 연구에 있어서 끊임없는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라도 문학 작품이 당대의 현실과 전혀 무관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당대의 현실을 이해하는 일은 문학 연구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며 그 유력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民俗學의 방법이 적용되어 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필자는 1989년 10월 30일에 이 자료가 공개된 후 그 全文을 활자화하고 譯註하여 간행한 바 있고¹⁾ 다른 두 편의 논문을 통하여 書誌, 해제, 작자 및 연대, 작품의 구성, 意義²⁾ 그리고 수필적 성격³⁾에 대하여 이미 논한 바 있

1) 전형대 · 박경신 譯註, 〈譯註 丙子日記〉, 서울; 예전사, 1991.

다. 그러나 아직 이 작품에 나타나 있는 1630년대 후반의 민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더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지금까지 필자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던 이 자료에 대한 일련의 논의들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丙子日記〉는 조선 仁祖 때에 좌의정을 지냈던 춘성부원군 南以雄의 부인인 南平 曹氏가 인조 14년(1636년) 12월부터 인조 18년(1640년) 8월까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지냈던 일은 물론 생활 주변에서 일어난 잡다한 일들을 세심하게 기록한 한글 필사본 일기이다. 따라서 작자와 연대가 명백한 최초의 대규모 私家의 日記로서 근 4년의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기록이기 때문에 당대의 생활상을 살피는 데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남아 있는 당시의 다른 자료들이 대부분 어떤 목적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이루어진 관찬자료이거나 당대의 생활상을 살피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을 수반하고 있는 개인의 漢文 文集들이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자료가 가지는 민속학적 의의는 실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자료에 나타난 당대의 민속을 검토하는 일은 나름대로의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丙子胡亂 직후의 전반적 상황

1. 정치적 상황

1636년에 일어난 병자호란은 임진왜란과 더불어 조선 사회에 커다란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낱 오랑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던 清나라에 굴욕적인 항복을 해야만 했던 상황은 당대의 조선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고 그 결과로 야기된 일련의 상황들은 일차적으로

2) 拙稿; 〈丙子日記〉研究. 국어국문학 제104호, 서울; 국어국문학회, 1990. 12. 31.

3) 拙稿; 〈丙子日記〉의 隨筆的 性格. 울산어문논집 제7집, 울산;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1. 2.

는 청나라에 대한 반감과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죽했다. 武力으로 조선을 굴복시킨 청나라는 그 과정에서 조선에 대해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和議가 성립된 후에도 많은 조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갔고 조선 조정에 대해서도 世子와 大君, 그리고 三公六卿의 적장자를 인질로 요구하였으며 세자를 수행하였던 정뇌경을 심양에서 처형하는 등 조선인의 감정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하였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조선인의 반감과 적개심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 작품의 작자도 청나라 군대에 대해서는 인용문 <1>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김없이 ‘도둑’이라고 지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청나라에 대한 당대 조선 사람들의 반감의 표현으로 이해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1>

◎ 십칠일 . . . <前略> . . . 그러구노라 흐니 청풍다히 길호 느져시나 쥬인셔 복명
도적이 불셔 그다히로 가다 흐니 싱심도 가디 말라 흐여눌 진위 감찰되으로 츄자
드려가니 불셔 나지나 계여고 . . . <後略> . . . (42面. 丙子年 12月17日)⁴⁾

<2>

◎ 십삼 도적이 네산 드다 소동으로 세 뒤 니힝초는 셔산으로 가고 진수는 계성으로 가 밀산군되 비곳 어드면 섬으로 들고 비곳 몬 어드면 홍취로셔 녀산으로 나가고 져 흐나 도적이 아무드려 해여딜 줄 모르고 큰길희 나기률 결단 몬흐여더니(50面. 丁丑年 1月13日)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나아가서는 청나라 황제에 대해서도 ‘이 도죽놈’이라고 지칭하면서 그가 ‘수이 죽과며 旱더니’라는 다음 인용문을 통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 사람의 부녀자로서 남의 나라 황제, 그것도 上國으로 떠받들지 않을 수 없는 大國의 황제를 ‘도적놈’이라고 지칭하면서 빨리 죽기를 바랐다고 말하는 것은 보통의 감정으로는 결코 쉬운 일일 수 없는 것이다.

4) 띠어쓰기 및 구두점은 필자. () 속의 날짜는 原本에 나타난 날짜이고 面數는 전형 대·박경신이 譯註한 앞의 책 面數를 가리킴. 이하 같음.

<3>

◎ 초칠 청 쁨의 넝감 보읍고 셔울 사롭을 기드리더니 식전의 쉬 드리오니 거월
십팔 난 넝감 유무 보오니 괴운은 평안호시나 호황이 나와야 오실가 시브니 이 도
죽놈은 수이 죽파며 헌더니 도로혀 수이 무수히 나오파며 시브다. . . <後略>. . .
(208面. 戊寅年 4月7日)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대의 조선은 그러한 反淸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
이 아니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청나라의 무력을 감당할 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의 그 적대감정은 깊이깊이 감추어 둘 수밖에는 없었던 것인
다. 그래서 겉으로는 떠받드는 척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가능한 한 청나라를
멀리하고 싶었던 것이 당대 벼슬아치들의 일반적 감정이었던듯 하다. 관리의
몸이면서도 청나라로 가는 使臣은 기피하고자 했던 심정을 다음 인용문 <4>
와 <5>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4>

◎ 넘수 . . . <前略> . . . 스모호룬날 샤온수 호시니 급급더니 절수를 겸호인다
하니 이 흥츠를 면호시게 되니 만팅호다(448面. 庚辰年 7月24日)

<5>

◎ 넘눅 청 오늘 드루니 절수를 겸호여 겨시다 하니 이런 민망이 업다 괴운 설위
수이수이 괴록호노라(448面. 庚辰年 7月26日)

인용문 <4>는 남편이 謝恩使로 청나라로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
이 답답하였는데 節使로 하여금 사은사를 겸하게 하기로 하였다는 말이 들리
니 남편이 청나라로 가지 않아도 될듯해서 천만다행이라는 내용이며, 인용문
<5>는 그러한 안도감도 잠시뿐, 그 절사까지를 남편이 겸하게 되었다는 소식
이 들리니 민망하고 슬프지 않을 수 없었다는 술회이다. 물론 작자의 남편은
나이도 많고 이미 청나라에 1년반이나 인질로 잡혀 있었던 前歷이 있었다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인용문 <4>와 <5>에 나타난
내용은 당대의 조선 관리들이 청나라에 가기를 의식적으로 싫어했던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비단 관리들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었다. 왕실의 적장자인 세자가 인질로 심양에 머물러야 했던 것은 차치하고라도 삼공육경의 적장자를 역시 심양에다 억류시킬 수밖에는 없었던 당대의 사정 때문에 관리들은 삼공육경의 반열에 드는 것을 그다지 반갑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다. 관리로서 지위가 상승하는 것을 마다할 벼슬아치가 어느 시대인들 있으랴만 당대의 현실은 결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6>

⑥ 열후르 . . . <前略> . . . 오늘 정수의 도현을 후시니 전의눈 대수현이 민망터니 이번은 이리 쇠훤호 이리 업소니 비록 후의 가나 안죽죽이니 깃브미 만만호다 모다 티하오니 안죽 면호나 엇덟고 旱노라(424面, 庚辰年 3月11日)

인용문 <6>은 웃지 못할 당대의 정치적 상황의 한 단면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정2품의 품계인 형조판서였던 남편이 종2품의 품계인 대사현으로 사실상 강등되었지만 작자로서는 아들을 청나라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비록 후의 가나 안죽죽이니 깃브미 만만호다'라고 술회하고 있다. 그리고 더구나 그 일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모두 致賀하려 왔다고 적고 있으니 그것이 작자 개인의 독단적 생각이 아니라 당대 관료사회의 일반적 인식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겠다.

또한 이 시기는 인용문 <7>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倭⁵⁾가 여러 차례 침범하여 戰雲이 감돌기도 했던 시대였다.

<7>

⑦ 초팔 . . . <前略> . . . 요수이 남왜 쇼식이 거록이 소동호니 혼자 근심고다 (164面, 戊寅年 1月8日)

5) 이 '왜(倭)'는 문맥상으로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왜구'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음.

<8>

◎ 넘눅 . . . <前略> . . . 식후의 셔울로셔 학이 오니 왜란 고별이 거루기 소동 혼다 흐고 천남이도 셔울 그저 잇고 박진수도 와서 유무흐고 반찬 가지가지 보내여다 시식 완흐면 평안도로 마조 가고 급흐면 이리 와 우리 텅츠를 두려갈 양으로 흐여시니 죠 엇디 피란 말을 듣는고 급급다(202面. 戊寅年 3月26日)

이렇게 청나라나 왜와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대의 조선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커다란 위기의 시대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일 것이다. 다음에 보이는 인용문 <9>에서 <13>까지가 이러한 의식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시절이 네도 잇던가’ 라든가 ‘가지 만흔 시절도 보았며’라는 탄식은 이러한 위기의식의 발로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다.

<9>

◎ 초구 . . . <前略> . . . 이런 시절이 네도 잇던가 급급흔 이리로다(424面. 庚辰年 3月9日)

<10>

◎ 초삼 . . . <前略> . . . 두립이 기성부 가서 훈 유무 보니 그 수이도 반갑기 만만타 가는 길히 점점 아득하니 어엿불사 부모 두고 어린 쪽식 두고 어듸라 가는고 이런 시절이 네도 잇던가(446面. 庚辰年 7月3日)

<11>

◎ 넘풀 . . . <前略> . . . 이 엇던 시절이 가지가지 변이 나눈고 흐노라 종을 다 꾀화 밤을 세아 나니 대평시도 이런 변란이 잇던가(104面. 丁丑年 7月28日)

<12>

◎ 십이일 . . . <前略> . . . 엇디 늘근 나눈 이리 사라서 가지 만흔 시절초차 보는고 아이고 훌 쁘이로다 . . . <後略> . . . (138面. 丁丑年 11月12日)

<13>

- ◎ 초구 <前略> 가지 만흔 시절도 보안더 그이업다(408面. 庚辰年 윤1月9日)

이러한 위기의식의 결과와 일정부분 관계가 있는 면이 있었으리라고 이해될 부분이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선 왕실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흔적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작자가 당대의 지배계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식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감안되어야 하겠지만, 당대의 청나라나 왜와의 복잡한 관계가 오히려 조선의 內的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들이 군데군데 발견된다는 것은 쉽게 보아넘길 일은 아닐 것이다.

<14>

- ◎ 초구 음한 새배 문안 가겨셔 왕손과 대군 가시는 뒤 모화관의 가 둔녀오시다 오늘 신민의 정식 경식이 참담하고 대쇼 인민이 아니울 리 업고 험명 대신 아오로 어니 빅관이나 빅반 갓던 사룸의 정식 엇덜고 내 이를을 눈물 금티 묻흐니 상휘 엇더 흐시거냐 가지 만흔 시절도 보안더 그이업다(408面. 庚辰年 윤1月9日)

<15>

- ◎ 초칠 풍청 동년 수시에 드르신다 혼다 만묘 신민이 다 즐거우니 아주 겨실 거 시와며 흐노라 . . . <後略> . . . (422面. 庚辰年 3月7日)

인용문 <14>는 심양에 인질로 잡혀 있던 소현세자의 일시 귀국을 위해서 王孫과 大君이 代身 청나라로 인질의 길을 떠나던 날의 기록이다. ‘대쇼 인민이 아니울 리 업고’라는 대목은, 주관성이 어느 정도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당대의 조선 왕실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소현세자가 일시 귀국하던 날의 기록인 인용문 <15> 속에 보이는 ‘만묘 신민이 다 즐거우니 아주 겨실 거시와며 흐노라’라는 대목과도 그軌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아래에서 조선 조정은 곁으로는 청나라의 명령을 받아

들이는 것처럼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그것에 승복하지 않는 二重的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나라와의 관계에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면 임시방편으로 해당 관리를 잠시 투옥하여 형식적인 조사를 하거나 잠시 귀양을 보내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는 것이 드러나 있는데 다음 인용문들이 그러한 사정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16>

◎ 초구 청 식후의 경배 가시더니 약류 잡습고 드르시다 나좌 티조 간 일로 박오
개 네감 병판 홍보 나옥훈신 고별 오니 의금부의 가 겨시다 밤등만 오시다 글언
놀라온 일 업고 티조 미신 보내기로 이러니 두렵이 가게 되니 혼 아희로 이목그티
잇다가 떠리 보내는 정식 그이업소니 이런 시절이 네도 잇던가 굽급흔 이리로다
(424面. 庚辰年 3月9日)

<17>

◎ 열호루 청 미명의 모다 드르신 보라 가시다 오늘 경수의 도현을 헌시니 천의논
대수현이 민망터니 이번은 이리 쇠חיפ흔 이리 업소니 비록 후의 가나 안죽죽이니
깃쁘미 만만하다 모다 티하오니 안죽 면호나 엇딜고 헌노라(424面. 庚辰年 3月11
日)

<18>

◎ 십수 음 오후 참우 연양군 동작이로 나가시니 그이업시 섭섭 굿브옵다 언머풀
가겨실 겨시 아니로되 인정이 엇더하다 호파호여 강두의 나가시니 불셔 건너 겨시
매 그 약류를 영안위과 강고의서 잡습고 쳐히여 드르시다(426面. 庚辰年 3月14
日)

인용문 <16>은 소현제자가 청나라로부터 일시귀국하던 다음 다음날의 기록이다. 본시 청나라에서 세자와 삼공육경의 적장자를 심양에다 인질로 둘 것을 요구하였을 때 조선의 일부 大臣들은 적장자 대신 穩子나 擣孫 등을 적장자로 가장하여 인질로 보냈었는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청나라에서 세자가 일시귀국할 때 이것을 외교적 문제로 삼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조선 조정에서는 청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해당 관리들을 일시 투옥하여 조사하

는 절차를 밟았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인용문 <16>이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용문 <17>은 그렇게 나옥 당한 이들을 당시의 현직관리들이 모여서 새벽에 위로차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적고 있는데 이것은 당대의 조선 조정이 청나라에 대해서 취했던 이중적 대응자세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강대국파의 외교적 마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동료들을 나옥하여 형식적으로나마 조사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당대 관리들의 곤혹감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단순한 동료만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곤혹감은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⁶⁾ 더구나 이 사건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당시의 병조판서가 바로 작자의 남편인 남이옹이었으니 그 심리적 부담은 더욱 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 경수의 도현을 헌시니 전의는 대수현이 민망터니 이번은 이리 쇠황혼 이리 업수니 비록 후의 가나 안죽죽이니 깃브미 만만하다’라는 이 날짜의 기록은 비록 관직이 오히려 낮아져도 그러한 마음의 부담이 없으며 자식을 심양에 인질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 자리이니 오히려 대사현이 더 좋다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을 능히 짐작하게 하여준다.

인용문 <18>은 이러한 이중적 대응자세를 더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仁祖實錄」에 의하면 조선 조정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定配於中道’⁷⁾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록에 나타난 ‘언며를 가겨실거시 아니로되’라는 말 속에는 이 정배가 清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한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조처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조선 조정은 내부적 합의에 도달하고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2. 사회적 상황

어느 시대에나 그러하듯이 전쟁후의 상황은 어수선할 수밖에는 없다. 人的

6) 나옥 되었다고 언급된 사람들 가운데 ‘비오개 넝감’이라고 지칭된 남이옹은 작자의 남편인 남이옹파는 사촌간이며 ‘병판’이라고 지칭된 연양군 이시백은 작자와는 외사촌 간임(전형대·박경신, 앞의 책 71面, 270面 참조).

7) 충청도 지역에 정배 시키기로 하였다는 말임. 위의 책, 426面 주 14) 참조.

86 울산어문논집 제 9 집

物的 피해는 물론이고 기존의 사회 질서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고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노려 도적이 창궐하고 민심이 흥흉해지는 것은 전쟁 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병자호란 후에도 예외적인 것이 아니어서 당시의 사회는 상당히 어수선했다는 것이 이 기록을 통하여서도 확인된다.

<19>

⑥ 넘팔 . . . <前略> . . . 초경은 혀여셔 귀관으로 고울로셔 소동이 나니 온무이 일시에 드러치니 하무흔 일이로되 고울로셔 방포와 두드리는 소리 흔 각의 펴더니 온무울 사롭이 소동후여 드러치니 밤을 새아 두립고 무셔우나 형적 업순 이리로되 . . . <後略> . . . (104面. 丁丑年 7月28日)

<20>

⑦ 초순 청 창원이 부안 슈공도 허며 가다 낭남 종들이 브린 종들을 보고 다 마조 나와 항거시 고별을 끊고 무수히 곰 나신 이리 하늘 같다 우리 노비 등도 항것님 덕분의 혀나도 주그니 업시 다 사란노라 허고 다끔 즐겨흐더라 허고 갓던 종들이 누의 집 사롭은 달화 쥐 보고 두라나리 만코 숨으리 만호티 저희 다 그러구로 고공이나 힘빠 혀여 주더라 허니 외방 종이나 항거시 모디리 아니후눈 다시로다 혀노라(138面. 丁丑年 11月10日)

<21>

⑧ 넘삼 . . . <前略> . . . 이날 의봉이 익남이와 셔울로셔 오니 어려운 빼예 슈고 허던 종과 그트랴 혜여 그리 뼈더던 이리 극히 과심하나 그려도 촉자오니 두라나 는 종도 이시니 엇디리 시보다(56面. 丁丑年 2月23日)

<22>

⑨ 초삼 . . . <前略> . . . 밤의 도적 드려 진지 거술 궤예 다 뽀러 가지고 광의 칙은 띠 약주지이 다 먹고 함 향과 쥐발 통노구 둘 새용 두에 막개 힝과 성의 웃 그제 보희 쓴재 도적 맛다(344面. 己卯年 7月3日)

<23>

⑩ 회일 . . . <前略> . . . 이남이 션산 가 무명 두 동 반 시리오다가 퉁剔 디나
화적 만나 몸만 드려오니 티즈 결속호려 기드리다가 홀 이리 업다 면화눈 빙수십
근 삭물게 시리오다가 그는 뿌리고 가다 흐고 가져왓다(412面, 庚辰年 윤1月29
日)

인용문 <19>는 귀신소동이 나서 온마을이 소란하고 작자도 두려워서 뜬눈
으로 밤을 지새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소동이 벌어졌다
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안정감을 잃고 있었고 민심이 동요되는 상태에 있었
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며 이것은 전쟁후에 흔히 있
을 수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용문 <20>과 <21> 속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인의 눈을 피하여 도망
하거나 숨는 노비들이 상당수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다.
인용문 <20> 가운데 있는 ‘누의 집 사룸은 달화 쥬 보고 두라나리 만코 숨으
리 만호티’라는 대목은, 비록 작자의 집 종들의 경우는 달랐다고 하지만, 상
당수의 노비들이 사회적 혼란에 편승하여 주인을 버리고 도망하였음을 분명
히 보여주고 있으며 인용문 <21>에 보이는 ‘두라나는 총도 이시니’라는 대목
은 그런 일이 실제 작자의 집에도 일어났을 가능성을 짚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인용문 <22>나 <23>에 보이는 사회적 현상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인용문 <22>는 작자의 집에 도적이 들어서 먹을 것과 살림살이를 훔쳐갔다
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작자의 남편이 당시에 漢城府判尹의 자리에 있었
으니 상당한 高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런 정도의 집에 도적이 들 정도
였다면 민간에서는 좀도둑이 상당히 심했다고 보아도 별 무리는 없을 것인
다.

인용문 <23>은 좀도둑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조직을 갖추고 무리를 지어서
횡행하는 도적떼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화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 도적떼는 무명辈는 약탈하지만 면화 정도는 아예 약탈하지도 않을
정도였음으로 보아 꽤 규모가 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동요가 직접적으로 근본적인 사회 질서의 변동에까지

이를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전쟁중이나 전쟁이 끝난 후에도 사회적 신분관계는 전쟁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아직 공고히 유지되고 있었으며 상하관계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앞의 인용문 <20>이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 인용문들의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24>

◎ 십구 대설 난취 알파 캐셔 묵다 비록 쇼경 종이나 제 미혹디 아니코 정성으로 흔니 종이란 거시 도쳐의 우연티 아니터라(44面. 丙子年 12月19日)

<25>

◎ 초이 우 명쉬 어미 지비 오니 집도 므던코 종의 지비 오니 편호다 홍정되의서 술 혼 병 보내여 겨시다 아무 뒤 가도 종이란 거시 우연티 아니호다(176面. 戊寅年 2月21日)

<26>

◎ 이십일 셔산 막산의 지비 오다 막셔기나 막되나 네 종이니 항거술 반거하고 밥 죽호여 머기더라(56面. 丁丑年 2月20日)

<27>

◎ 초수 청 의꿔되의 가 둔녀오다 니산 눈소리 꿩목 두 필 쪽 희여 왓다 그려도 브리년 종이니 다른다(76面. 丁丑年 윤4月4日)

3. 경제적 상황

임진왜란이라는 대규모의 전란을 겪고 불과 사십여년만에 병자호란이라는 전란을 또 겪어야 했으니 당대의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서민들은 물론이고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조차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당대의 경제적 상황이었다.

<28>

◎ 초팔 우 슈원 션탁이 녹홰 남진 오니 계 종 아^희 아오라 여^蘿이 피로하고 살
의지 업서라 흐니 그이업다(178面, 戊寅年 2月8日)

<29>

◎ 초구 . . . <前略> . . . 션탁이 오늘 가고 보리씨 너 말 무명 혼 필 주어 농과
나 흐고 보리나 갈라 흐다(178面, 戊寅年 2月9日)

<30>

◎ 이십일 청 요수의 그물기 그러니 쇠 가난 근심이로다 . . . <後略> . . . (322面,
己卯年 4月20日)

인용문 <28>은 전쟁 직후에 도저히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다고 水原에서
찾아와 하소연하는 종의 처지에 가슴 아파하는 작자의 심정을 기록한 것이
고, <29>는 주인이라고는 하지만 자신 역시 餘力이 없어서 겨우 그 종에게
보리씨와 무명 한 필을 주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심정을 기록하
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당대의 서민들의 생활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빠
져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지배계층에게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보
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용문 <30>에서는 날씨가 가무
니 또 가난이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당대의 경제적 상황
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여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라
고 하겠다.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고관의 집에서도 날씨가 가물어서 가난이
걱정일 정도였으니 일반 서민들의 사정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이다.

III. <丙子日記>에 나타난 民俗

1. 衣食住 생활

1) 衣生活

당대의 서민들의 옷은 목화에서 실을 뽑은 무명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옷이나 옷의 재료에 대한 언급은 대개 이 목화나 무명과 관련된 것들이며 기록에 나타나는 빈도도 상당히 높음으로 보아 당대의 의생활의 중심에 무명이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31>

◎ 십수 . . . <前略> . . . 퉁이 기령 갓더니 목화 빅삼십두 근 가져오다(140面. 丁巳年 11月14日)

◎ 이십수 . . . <前略> . . . 턱남이 셔울 가 너려오니 무성이 뜯 것 혼 필 마전호 니 끈져 오고 청배집 해아 어의 뵈 뜯 것 가져오다 난리 나갈 제 몸의 브튼 것만 디녀 나서 녀산 가 의취덕 면화로 섞나히 여러 필 나코 기령 면화 가져다가 질삼들을 흐니 그려도 벗디 아녀 열고 테디 아니흐니 다 총곳 아니면 엇디리(216面. 戊寅年 4月24日)

◎ 회일 . . . <前略> . . . 이남이 선산 가 무명 두 동 반 시려오다가 퉁꿔 디나 화적 만나 몸만 드려오니 티조 결속흐려 기드리다가 홀 이리 업다 면화눈 빅수십 근 삭물게 시려오다가 그는 부리고 가다 흐고 가져왔다(412面. 庚辰年 윤1月29日)

◎ 초구 청 귀성이 주그니 글언 놀라온 일 업다 무명 혼 필 주다(106面. 丁巳年 8月9日)

◎ 초구 . . . <前略> . . . 선탕이 오늘 가고 보리씨 너 말 무명 혼 필 주어 놓고 나 흐고 보리나 갈라 흐다(178面. 戊寅年 2月9日)

◎ 십팔 . . . <前略> . . . 죠관덕 공 바둔 무명 열 필 가져가다(198面. 戊寅年 3月 18日)

◎ 이십이일 . . . <前略> . . . 덩뇌경 남쥬부 양모 상수의 무명 두 필 가다 . . . <後略> . . . (332面. 己卯年 5月22日)

무명 이외의 옷의 재료로는 다음 인용문 <32>에서 보이는 ‘모시’가 있고 인용문 <33>에서 ‘면디’라고 지칭된 명주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재료들로 지어진 옷의 구체적인 것들로는 인용문 <32>과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 럭, 겹옷, 홀옷, 겹바지, 적삼, 속옷, 저고리 등이 있었으며 버선을 신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용문 <34>를 통해서 홀이불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2>

⑥ 초이 . . . <前略> . . . 박진수과 일봉이 셔울로 가니 심양 갈 모시 텐의 모시 겹옷 훗옷 겹바다 격삼 습것 누비 빼오로기 보선 보회 봉하고 후복의 겹옷 격삼 흑여 가다(64面. 丁丑年 4月2日)

<33>

⑦ 초눅 청 셔울 갖던 종돌하고 막개 오다 괴츄니 맷둔 짐은 관되함은 줄가시니 그재 잇고 농의 치를 다 보회 뺏다 흐더니 핫거스로 열여덟 것과 면디 두 필이 업고 개디 맷둔 짐은 더 고의 사하더라 흐더니 혼나도 업고 글언 농의 거 샤실 함지 이 다 일흔니 글언 일 업다 일가드리나 모스하고 넝감이 평안이 둔녀 나오시물 뉴야 원이며 글언 짐이나 강도의 간 네 농의 그독 녀흔 것 등의 그눈 거스로 웃거림 겹것 아으로 여순 나쁜 것 일흔나 곡석이나 그 밖의 거시나 싱각도 업다. . . <後略>. . . (66面. 丁丑年 4月6日)

<34>

⑧ 초순 . . . <前略> . . . 죠 연양되어로셔 유무 오니 거른 관티 수이 보내라 흐시매 견위하여 사롭이 셔울로 간다 거른 관티 금썩 혼니불 혼나히 뺏고 대구 여수 조차 세 무명 자루의 녀허 유무 동봉하여 간다 의취되어의 가셔 오늘야 오다(92面. 丁丑年 6月10日)

<35>

⑨ 초눅 보령 영무니 오니 주셔되 넘던 져구리하고 습것 지어 청어파 감장하여 보내여다(58面. 丁丑年 3月6日)

2) 食生活

조선시대의 식생활은 기본적으로는 오늘날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고 알려져 있다. 오늘날 우리가 韓食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음식들이 이미 이 시기에 존재하였으며 식품의 종류도 크게 증가하여 오늘날 우리의 식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⁸⁾, 이러한 사실은 이 작품을 통해서도 비

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음식이나 음식의 재료들은 주로 선물을 통해서 주고 받았음을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가 전쟁 중이거나 전쟁 직후였다는 시대적 특수성과 상당부분은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고받은 물건들 가운데에는 당대로서는 상당히 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되는 것들도 확인되는데 이것은 이 글의 작자가 상당한 신분의 大家집 부인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성격이라고 판단된다.

우선 당대에 食用하고 있었던 곡식부터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36>

◎ 념팔 청 . . . <前略> . . . 명오그 공도 쌀 열너말가웃 진임 첨미 각 일 두 흐여
왓다 . . . <後略> . . . (218面. 戊寅年 4月28日)

<37>

◎ 초구 . . . <前略> . . . 선택이 오늘 가고 보리씨 너 말 무명 혼 필 주어 농과
나 흐고 보리나 갈라 흐다(178面. 戊寅年 2月9日)

<38>

◎ 십팔 청 . . . <前略> . . . 신평의 콩 풀라 네 필 가져가시다(154面. 丁丑年 12月18
日)

<39>

◎ 십수 청 . . . <前略> . . . 빅미 단 말 머조 단 말 격두 두 말 진임 혼 말 쇠
두 되 빅지 두 권 고리 키 각 흐나 누룩 혼 동 건티 둘 보내여 겨시다(70面. 丁丑
年 4月14日)

<40>

◎ 십숙칠 청 녹도 그르다 . . . <後略> . . . (184面. 戊寅年 2月16日)

8) 박계홍, 〈한국민속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1983. 87面.

<41>

◎ 넘팔 . . . <前略> . . . 무전 쪽리 모밀 아홉 말 가다(342面;己卯年 6月28日)

<42>

◎ 십칠 청 신흥 뉴싱원 오라바님 와 겨셔 날 보시고 금산으로 가려 흐신다 의이
뿔과 엿 고야 갖다가 주신다 . . . <後略> . . . (154面, 丁丑年 12月17日)

인용문 <36>을 통해서는 쌀, 찹쌀(점미), 참깨(진임) 등이 당대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인용문 <37>을 통해서는 보리농사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용문 <38>을 통해서는 콩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인용문 <39>를 통해서는 매조, 팔(蟹斗)도 역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용문 <40>과 <41>에는 녹두와 메밀도 언급되고 있고 인용문 <42>를 보면 율무(의이)도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곡식들로 만들어 먹은 구체적 음식들로는, 인용문 <43>에서 보는 바와같이 팔죽, 술, 떡 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인용문 <44>를 보면 미싯가루도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앞의 인용문 <42>에서 본 바와 같이 율무를 이용한 엿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3>

◎ 넘오 . . . <前略> . . . 이날 당진읍니 호당 박상의·지비 오니 주인 어미 뜻죽
수어 혼 동희 주고 술 가져다가 머기더라 심진수익의셔 저녁 진지하고 편쥬하고
겨집종 앗더라(46面, 丙子年 12月25日)

<44>

◎ 병자년 십이월 미시나 프러 머그려 흐더니 . . . <後略> . . . (40面, 丙子年 12月
날짜 미상)

곡식 다음으로 중요한 사용의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는 해산물과 산짐승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역시 이 작품의 특성상 선물로 주고 받은 경우가 많았고 더러는 하인들이 잡거나 貢으로 받는 경우들도 있었다. 해산물에는 각종의 생선들은 물론이고 젓갈 종류도 상당히 있었고 미역 등의 해조류

나 전복 등의 어패류도 있었다. 산짐승으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평인데 ‘생치’라고 하는 죽은 것을 직접 주고 받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치’라고 하여 말린 것을 주고 받은 기록이 보인다. 꿩 다음으로는 노루를 잡았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어서 이때에는 노루가 상당히 많이 野生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다음 인용문을 보기로 하자.

<45>

◎ 일일 이일 청혹음 망남이 심양 갈 것 가져가다 보센 혼무이 사당 편 당죽의 봉
호니 박산 혼 당죽 건시 보바 혼 덤 뿐니 건티 뽀더 두 마리 조괴 두 못 반 민어
세 마리 대구 호나 건시 또 혼 덤 천초 널굽 되 판관 소송 네초 열덩이 대되 자르
세 보 호나 제 양식 호여가기 네 필 익남이 경묘 제물 시러 험씌 가다 이 날 쁨의
도 네감 보웁고 내 여러 날 편티 아녀 심심타 전취 판관 니참의퇴의 와셔 감수 .
하고 잔 밧조이 호시며 박산 세 뼘 청어 석 드롭 보내여다 단즈호고 보늬여다 전
취 부윤썩셔 박산 두 단 싱티 호나 건시 혼 덤 보내고 잔상 그초호여 보내고 녀산
원님도 잔상 그초호여 보내시니 이런 것도 다 네감 덕분이로다 . . . <中略> . . .
또 금산의 종이 갓더니 싱티 네 건티 세 실파돌 감장 고장 보내시니 친호오나 어
렵디 아니호기눈 내 수촌님으로 그런가 호노라(156面. 丁丑年 12月21, 22日)

이 기록에는 여러 가지의 음식들과 그 재료들이 나타나 있다. 사탕, 박산, 꽂감 등의 음식과 함께 천초라는 약재의 이름도 보이며 꿩이 상당히 중요한 선물의 품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선으로는 청어와 대구가 보이는데 이들은 다른 곳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것들이다. 또한 간장도 선물의 물목 가운데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피란 중에 있는 작자가 간장을 장만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한 친척들이 선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용문 <46>에 의하면 소금과 계젓도 선물의 물목 가운데 들어 있음을 확인된다.

<46>

◎ 이십칠 청 이 고올셔 들파 단 말 소곰 서 말 계젓 스를 보늬여다 . . . <後略> . . .
. (160面. 丁丑年 12月27日)

<47>

◎ 십구 이십일 청온 남원서 문어 도미 홍합 우리게만 보내여 겨시다 . . . <後略> . . . (128面. 丁丑年 10月19日)

<48>

◎ 널풀 우 창한이 부안 갓더니 부안 태슈 심택시 별좌로 인연하여 우리 게 완논
괴별 듯고 단조하고 조기 두 뜻 민어 혼나 세하 석화것 각 서 되 보내여다 싱조기
혼 뜻 보내여다(82面. 丁丑年 윤4月28日)

<49>

◎ 이를 사흘 청 샤직 참봉 약쥬 낙디 보내여 겨시다 . . . <後略> . . . (260面. 戊寅年 9月22, 23日)

<50>

◎ 십삼 청 . . . <前略> . . . 퉁이 둑이 강릉 가더니 오다 우케 녁 셈의 머육 빅
열넓굽 동 대구 삼십눅 전의 유적 머육 스므 동 쇼수는 다 드리고 대구 설흔 머육
빅설흔 동 둑이 맛다다 . . . <後略> . . . (226面. 戊寅年 5月13日)

<51>

◎ 십눅십칠 혹음우 익남이 서울 가다 심양 갈 포육 두 뎀 전복 네 콧 민어 혼나
조기 혼 뜻 양 물외니 금은화 차거리 봉하여 죄명길 텅추 간다 혼거눌 미쳐 보내
노라 이날 가다 . . . <後略> . . . (100面. 丁丑年 7月16, 17日)

앞서 언급하였던 대구와 청어 이외에도 인용문 <47>을 보면 문어, 도미, 홍합 등의 해산물 이름이 보인다. 또한 인용문 <48>에는 민어와 조기의 이름이 보이며, 그냥 조기와 생조기를 구별하여 말한 것을 보면 당시에도 굴비를 만들어 먹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새우젓과 굴젓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인용문 <49>에는 낙지가 등장하고 인용문 <50>에는 미역이 등장하고 있으며 인용문 <51>에는 전복까지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당대에 있어서 생선을 비롯한 해산물들이 곡식과 함께 가장 중요한 식료품의 하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96 울산어문논집 제 9 집

평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산짐승으로는 다음 인용문 <52>에 보이는 노루가 있다. 그리고 인용문 <53>에는 오리알이 언급되고 있음으로 보아 오리도 식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식용되었던 것으로는 인용문 <54>에 보이는 앵두, <55>에 보이는 살구 등의 과일이 있었다.

<52>

◎ 오일 망남이 노로 세 잡다 집 니다 나쇠 잠우(186面. 戊寅年 2月25日)

<53>

◎ 이십일 청 이간의 평상구티 나모 굴고 바조 그라 안즈니 쳐그나 쇠훤타 거리실
논 가래 빅라 세히 갓다 효신 어미 전의 빨 훈 말 보내여더니 쇼쥬 아홉 복주 흐
여 웃다 압난 열 가져오다 탕증으로 밥을 몯 머그니 작작 머그면 꾀 후리고 쇠꼴
히라도 손이 잇다감 년호여 오시니 뒤탑호노라 그려타(214面. 戊寅年 4月20日)

<54>

◎ 오월 쇼건 무오 계회 쑥 . . . <前略> . . . 나싱원티 편파 잉도 보내여 겨시고
합덕틱의셔 편파 술 보내여다(222面. 戊寅年 5月1日)

<55>

◎ 넘이 . . . <前略> . . . 둥방어미 쇼쥬 서너 복주 술고 가져와 . . . <後略> . . .
(230面. 戊寅年 5月20日)

그 외에 식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가운데에 홍미를 끄는 것으로는 다음 인용문 <56>에 보이는 마늘이 있는데, 이 마늘은 단순히 식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용문 <57>에 의하면 술도 담가 먹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⁹⁾ 또한 식용한 것은 아니지만 인용문 <58>을 보면 담배가 이미 기호식품으로 자리잡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 ‘호산춘’은 마늘을 넣고 담은 술.

<56>

- ⑥ 초오 청 당시원색서 조괴 호 뜻 마눌 보내여다 . . . <後略> . . . (76面, 丁丑年 윤4月5日)

<57>

- ⑦ 넘삼 음 심제시 셔울 갖다가 이 고울 드려 조괴 서 뜻 민어 혼나 건티 혼나 죠
인 원님색서 싱티 혼나 호산춘 혼 병 몰라다고 혼고 조차 보내여거늘 그 술 가지
고 삼등떡의 가 두하시 머기려 가셔 모다 모다 먹고 집 술 혼 병도 가져와 머그
시다(128面, 丁丑年 10月23日)

<58>

- ⑧ 넘눅 청 이번 진수 흥초의도 심양갈 유무 담바피 다소덩이 포육 두 덤 가다(82
面, 丁丑年 윤4月26日)

3) 住生活

의생활이나 식생활에 비해서 주생활에 관한 기록은 그다지 많지 않아서 그
면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주생활에 대해서 나타난 기록들로는 대체로
다음 인용문들을 들 수 있는 정도이다.

<59>

- ⑨ 초순 일일 이일 삼일 수일 청 알찌 수간 집 지어 그 날 니다 방도 업고 오획양
도 업서 게 종돌 각각 나모 나영 시겨 혼루 짓다(78面, 丁丑年 윤4月 10日)

<60>

- ⑩ 십륙칠 청 . . . <前略> . . . 집 나모 벼하고 우물 츄다(184面, 戊寅年 2月16日)

<61>

- ⑪ 이십일 청 이간의 평상고티 나모 굽고 바조 그라 안즈니 쟈그나 쇠한다 . . .
<後略> . . . (214面, 戊寅年 4月20日)

<62>

◎ 넘구 청 잉낭방 구들 노타(240面. 戊寅年 6月29日)

<63>

◎ 초순 종일 음 잠설 . . . <前略> . . . 하인도 슬겁고 셔울셔 저 굿길 제 흥낭의
와 디내던 일을 아니 인수 알식 전일을 성각하느니라 우리 자본 뢰명의 가 동학
네 가져오다(178面. 戊寅年 2月10日)

<64>

◎ 회일 청 뒤터회 방하 거다 . . . <後略> . . .(240面. 戊寅年 6月30日)

인용문 <59>는 피난중에 잠시 머물게 되었던 서산과 당진에서 임시거처를
마련하였을 때의 기록이다. 四間집을 나무로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영
이라는 단어와 ‘이었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짚으로 만든 이영으로 지
붕을 한 草家를 지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당대의 農家에는 외양간이 집안에
마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용문 <60>은 서산 당진에서 거처를 충주로
옮긴 후의 기록이다. 난리는 일단 끝이 났으나 남편이 소현세자를 모시고 가
는 宰臣으로 심양으로 간 후였기 때문에 서울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일단 충
주에 머물게 되었던 때의 기록인데, ‘우물을 쳤다’는 기록으로 보아 당대의
民家에는 집안에 우물이 있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인용문 <61> 역
시 충주에 머물 때의 기록인데 문면에 나타난 바를 보면 평상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집 둘레에는 울타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용문 <62>에는
당시에도 난방시설로는 온돌을 사용했다는 것을 ‘구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인용문 <63>에는 ‘행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당대의 大家
집에는 행랑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용문 <64>는 남편이 심양에서
돌아와서 작자가 서울의 본집으로 돌아온 후의 기록인데 집의 뒤타에 방아를
걸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당대에는 私家에 방아시설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冠婚喪祭

1) 冠禮

성년식에 해당하는 관례는 통파의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 이 관례는 어디까지나 일부 상류층에서나 행해진 것으로 일반 서민들에게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혼례에 포함되어 버려서 따로이 행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⁰⁾. 그리고 이런 사정과 일정한 관련이 있겠지만, 이 관례에 대한 기록은 이 작품에서도 단 한군데에만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 인용문 <65>가 그것이다. 관례를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준각이'는 문맥상으로 보아 작자의 친정 조카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역시 士族 집안의 사람이다. 따라서 이 자료를 놓고 보았을 때, 士族의 집안에서는 이 시기까지 관례를 행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일반성을 가지는 것이며, 나아가서 일반 서민들도 이 시기에 관례를 행했는지 어떤지는 확인하기 곤란하다.

<65>

◎ 십팔 청 고새며 파楙로 가시니 섭섭고 흐뭇거우니 ㅋ이업순 정회도 다 몽하고 서른 여희여 떠나오니 이후 다시 만날 고약을 엊디 뎅흐리 인식 하 거웃 일이니 슬프미 ㅋ이업고 준각이 가관흐여 와시니 고꼴이 하 용널티 아니하니 깃브고 두곳 거워 오라바님을 싱각고 더욱 ㅋ이업다 . . . <後略> . . . (310面. 己卯年 3月18日)

2) 婚禮

병자호란이라는 전란을 겪으면서도 혼례의 풍습이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인용문 <65>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속이 가지는 끈질긴 생명력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병자호란의 戰禍가 전국적으로 미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10) 이두현 · 장주근 · 이광규 공저, 〈한국민속학개설〉, 서울; 학연사, 1985. 82面.

그리고 이 당시에도 부모의 壽中에는 혼례를 하지 않는 것이 민속으로 되어 있었음을 인용문 <67>과 <68>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인용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등쇼’라는 사람은 작자 남편의 生家쪽 형제인 南以敏의 손자로 작자의 양손자가 된 사람인데 그의 生父인 南斗正이 영월에서 살다가 병세가 위중하였기 때문에 8월 2일에 예정했던 혼사를 서둘러서 7월 21일에 거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¹¹⁾ 이것은 부모의 병세가 위중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서둘러 혼례를 거행함으로써 壽으로 혼례를 거행할 수 없는 일을 막으려 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66>

◎ 초순 니샤인듸 혼인 디내시니 누려가 대되 보옵고 혼인 죄구나 평시나 다른디 아니케 디내시다 . . . <後略> . . . (78面. 丁丑年 윤4月11, 12, 13, 14日)

<67>

◎ 십구 . . . <前略> . . . 일봉이 넝월 둔녀오다 병환이 일양이오 등터라 혼니 등쇼의 혼인을 낙월 초이일 명후여다가 불의예 혼네 만호려 혼다(244面. 戊寅年 7月 19日)

<68>

◎ 스므흐르 음만우 등쇼의 혼네불 불의예 디내니 슬프고 든든하나 ݣ이업다(244面. 戊寅年 7月21日)

3) 壽禮

이 작품 속에 상례에 관한 기록은 의외로 많다. 그것은 역시 壽이라는 것이 사람의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 가운데에서 가장 큰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례에 관한 많은 기록들 가운데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민속과 관련하여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11)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南斗正은 아들의 혼례 예정일이었던 무인년 8월 2일에 병으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음(전형대·박경신, 앞의 책, 248面 참조).

<69>

- ① 초수 경한 윤청안 상수 고별 오니 놀랍다. . . <後略>. . . (288面. 己卯年 1月4日)
- ② 회일 청 . . . <前略>. . . 윤청안 티면호다. . . <後略>. . . (292面. 己卯年 1月30日)
- ③ 초삼 청 윤청안 발인호다. . . <後略>. . . (294面. 己卯年 2月3日)

<70>

- ④ 십칠 비오개 상수 나다 . . . <後略>. . . (448面. 庚辰年 7月17日)
- ⑤ 스모이틀 비오개 성복(448面. 庚辰年 7月22日)
- ⑥ 팔월 쇼건 을유 경술 삭 청 비오개 삭제에 가 든녀오시다(450面. 庚辰年 8月1日)

<71>

- ⑦ 이십이일 음 . . . <前略>. . . 명뇌경 남주부 양모 상수의 무명 두 필 가다 . . . <後略>. . . (332面. 己卯年 5月22日)

<72>

- ⑧ 초팔 청 별좌 청취로 가다 이날 귀성이 꽉란호여(106面. 丁丑年 8月8日)
- ⑨ 초구 청 귀성이 주그니 글언 놀라온 일 업다 무명 혼 필 주다(106面. 丁丑年 8月9日)

인용문 <69>는 작자의 남편의 친지였던 尹清安¹²⁾의 壽에 대한 기록인데 이 기록에 의하면 당대의 선비들은 죽은 후 한 달만에 발인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故人의 친지들은 고인을 위해서 발인 전에 따로이 날을 택하여致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용문 <70>은 당대 政界에서 小北의 거두로 이 조판서를 자냈으며 개인적으로는 작자의 남편의 生家쪽으로 사촌이었던 南以恭(1565-1640)의 壽에 대한 기록인데 이 기록에 의하면 당대의 壽禮에도 成服祭가 있었고 朔祭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용문 <71>에 의하면 당대

12) 현재의 충청북도 괴산군에 있었던 清安의 수령을 지낸 尹某. 구체적으로는 尹世任인지 尹命履인지 불명확함(위의 책. 274面 참조).

의 대가집에서는 가까운 친지의 상이 나면 대개 부물로 무명 한 필 정도를 보낸 사정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인용문 <72>에서 보는 바와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종¹³⁾들의喪에도 그 정도를 도와줄 수 있었던듯 하다.

4) 祭禮

제례는 한국의 가족제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제사권은 재산권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기록에 나타난 제례의 상황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과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내용들이 일부 있어서 주목의 대상으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된다¹⁴⁾. 우선 인용문을 통해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73>

◎ 널구 청 대고라 형님되의셔 디내시고 새로이 슬프오며 더리가 겨셔 어누만 싱 각호시거뇨. . . <後略>. . . (160面. 丁丑年 12月29日)

<74>

◎ 널구 청 대고 디내옵 족하남네 셙식후 가시다(286面. 戊寅年 12月29日)

<75>

◎ 널칠 . . . <前略>. . . 샤직꼴 대고 계풀 출혀 보내다 닷덧꼴되 촌례시나 우리
계서 흐옵다(396面. 己卯年 12月27日)

<76>

◎ 널구 청 대고라 출화 가 디내옵다 넝감 두림 뇠와 가 디내옵다 뉴칭원 조창한
이 와 둔녀가다(396面. 己卯年 12月29日)

13) 위의 책 58面을 보면 ‘귀생이’는 작자집의 종이었음.

14) 이 문제는 당시의 가족제도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대목이라고 해야겠고 간단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됨. 따라서 후속되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7>

◎ 이일 외조모 고제 경낭딕 츄례라코 두하 와 디내옵다 . . . <後略> . . . (128面。
丁丑年 10月22日)

인용문 <73>에서 <76>은 같은 사람의 제사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은 그 날짜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인용문 <75>를 보면 그 제물을 차리는 것이 형제들 사이에 윤번제로 하게 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닷덧꼴딕 츄례시나 우리게셔 흐웁다’라는 언급은 분명히 비록 작자의 집에서 이번 제사의 제물을 준비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이번에 자신의 집에서 할 차례는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작자의 남편이 당시 한성부판윤의 벼슬에 있었으니 다른 형제들보다는 형편이 나았으리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랬기 때문에 제물을 준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제물을 준비하는 차례가 형제들 사이에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같은 제사에 대한 언급은 아니지만 인용문 <77>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인용문 <74>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인용문 <73>에는 ‘형님댁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되어 있고 <75>와 <76>에는 어딘가로 제물을 차려 보낸 것으로 되어 있지만 <74>에는 제사를 어디에서 지냈다는 것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오히려 문맥상으로 보면 작자 자신의 집에서 지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더 많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욱 이해하기 곤란한 것은 인용문 <77>에 나타나 있는 ‘외조모’의 제사라는 언급이다. ‘正郎’은 작자의 남편인 남이옹의 형제 남이민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니 그렇다면 결국 당대의 남씨 집안에서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외조모의 제사도 지내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가장제 아래에서의 제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다음 인용문의 경우에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78>

◎ 십팔 청 . . . <前略> . . . 문밧모님 고제시더니 조별좌 오려타가 비로 몬온가

시보다 천남이를 두리고 뼈 스와 제를 디내오니 슬프옵고 셜운 경이 그이업고 외손이나 이시면 아니호오랴 그이업서 호노라 족하둘도 호나도 묻오니 글언 섭섭이 업다(168面. 戊寅年 1月18日)

<79>

◎ 십팔 청한 어마님 그제 디내오니 새롭수이 슬프옵다 넝감 참제하시니 경녕이 죽히 든든호오시랴 내 무옵도 그이업시 든든호옵다 감찰도 참제하다. . . <後略>. . . (290面. 己卯年 1月18日)

<80>

◎ 십팔 묘설 만경 형조 좌의 문방모님 그제 디내오니 외손도 감찰이 두림이 두리고 제를 호오니 슬프오미 새롭수이 그이업고 첨 조식인돌 엇디 아니 크리 제 후의 감찰도 나가고 세배 샤직 상자도 가다 나죄 둥쥬 오다(402面. 庚辰年 1月18日)

이 인용문들도 역시 같은 사람의 제사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은 그 날짜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인용문 <78>과 <80>에는 분명히 ‘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며, 인용문 <78>에는 제사를 지낸 ‘천남이’에 대한 언급에 앞서서, ‘문밖 어머님의 기제인데 조별좌가 오려고 하다가 비 때문에 못오는 모양’이라고 하여 조별좌라는 사람이 이 제사와 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작품 속에서 보면 조별좌는 작자의 친정쪽으로 매우 가까운 친척인 것으로 판단된다¹⁵⁾. 인용문 <78>에서 ‘외손이라도 있었으면’이라고 한 것은 ‘천남이’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천남이’는 인용문 <80>에 언급된 ‘두림이’와 같은 사람으로 <80>에 나타난대로 작자의 남편의 姪子이다. 따라서 이 인용문들에 나타난 바를 종합하면 결국 작자는 친정 어머니의 제사를 자신이 직접 지내주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상의 인용문들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같이, 이 당시의 제례는 전적으로 부계적장자의 혈통만을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이해하기에는 곤란한 대목들이 상당히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5) 전형대 · 박경신, 앞의 책, 58面 참조.

3. 歲時風俗

세시풍속에 관련된 기록은 이 작품에 그다지 많지 않은데 그 나타난 바를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81>

④ 망일 종일 우 다례^하옵 (166面. 戊寅年. 1月15日)

<82>

⑥ 삼일 차례 디내옵고 . . . <後略> . . . (192面. 戊寅年. 3月3日)

⑥ 삼삼 종일 대우 차례 디내옵고 . . . <後略> . . . (304面. 己卯年. 3月3日)

<83>

⑤ 초소 청 오장이 셔울 가다 파줘 광줘 풍양 한식제 출혀 쉬^하고 흄색 가다 (176面. 戊寅年. 2月4日)

<84>

⑥ 초팔 청 . . . <前略> . . . 월하의 진수과 두립이 등 링그라 돌고 보니 네일이 싱각^하고 슬프다 . . . <後略> . . . (208面. 戊寅年. 4月8日)

⑥ 초팔 청 수도시 좌고 관동날이라도 괴운도 아니 고아 혹시고 아무도 업소니 무류^하여 혼자 일드려 자다 (318面. 己卯年. 4月8日)

<85>

⑥ 이를 남성원과 진수과 일봉이 셔울 단오제 디내려 가다 . . . <後略> . . . (80面. 丁丑年. 윤4月22日)

⑥ 단오일 청 하 섭섭^하여 쥬과 편^하여 차례^하 옵다 (84面. 丁丑年. 5月5日)

⑥ 초순 후청혹음 . . . <前略> . . . 광줘 계는 무수히 디내시고 와 겨시다 (84面. 丁丑年. 5月10日)

⑥ 초소 초오 청 숨의 넝감도 보옵고 문밧모님 보오니 든든^하 옵다 오늘은 명일이라 쇠꼴 사롭이 다 드려 쉬다 일봉이 이남이 온다 혹니 단오제 디내고 을 거슬 무옵이 놀라와 밧비 무르라 혹니 넝감 월강^하시다코 유무를 가져오니 즐겁고 식환^하

미 아무라타 업서 봄이 공동의 오른듯 놀가 시브니 엇디 다 고록호리... <後略>.
.. (224面. 戊寅年 5月4, 5日)

<86>

◎ 십수 망일 청 뉴도 다례호옵... <後略>... (94面. 丁丑年 6月14, 15日)

<87>

◎ 초칠 청 츄석제도 디내옵고 심양 갈 일 듯보라 천님이 셔울 가다... <後略>...
. (106面. 丁丑年 8月7日)

인용문 <81>은 음력 정월 보름날에 대한 기록인데 이날 다례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용문 <82>는 삼월삼진날에 대한 기록인데 이날도 다례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83>을 통해서는 한식날에 음식을 장만하여 先山에 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용문 <84>는 사월 초파일에 대한 기록인데 이날은 관등의 풍속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용문 <85>는 단오일에 관련된 기록인데, 단오에는 다례와, 先山에 대한 祭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날은 시골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하루를 쉬는 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용문 <86>은 유월유두에 대한 기록인데 이날도 다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87>에 따르면 추석에는 역시 先山에 대한 祭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기타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일반화 되어 있었으리라고 선뜻 판단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지만 당대의 대가집들에서는 죽은 가족의 生日에도 섭섭하여 다례를 지냈다는 기록이 이 작품에는 군데군데 눈에 띈다. 인용문 <88>과 <89>가 그런 기록 가운데 일부인데, <88>은 돌아가신 집안 어른들의 생일에 다례를 지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89>에는 죽은 며느리들의 생일에도 다례를 지냈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다.

<88>

- ⑥ 념오 양조모 싱일 다례호옵... <後略>... (96面. 丁丑年 6月25日)
- ⑦ 초순 양부 싱일 다례호옵다... <後略>... (258面. 戊寅年 9月10日)
- ⑧ 이십일 양모 싱일 다례 후 비 시작호여 초혼의 편동 벽녀호고 밤듭은 지호다
(96面. 丁丑年 6月20日)

<89>

- ⑨ 념구 녀취 며느리 싱일 다례호다(246面. 戊寅年 7月29日)
- ⑩ 념눅 총일 우 청불 며느리 싱일 다례호니 새로이 성각이 고이 업다(86面. 丁丑年 5月26日)

III. 결 론

본고는 〈丙子日記〉를 자료로 하여 병자호란 당시와 그 직후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민속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시의 자료들 가운데에서는, 이 작품이 그러한 내용들을 파악하기에 가장 적절한 자료로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이 작품에 나타난 1630년대 후반은 대외적으로는 청나라나 왜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병자호란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와 굴욕적인 강화의 성립은 당대의 조선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엄청난 일이었고 이와 함께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 속으로만 묻어 두고 겉으로는 청나라를 대국으로 떠받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적 대응방법은 당대의 조정에서부터 관리들, 심지어는 민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일반적인 경향을 보인듯하다. 전란 직후였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 질서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도적이 창궐하고 민심은 상당히 흥흉한 상태였고 경제적 상황 역시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아직 신분질서가 결정적

으로 허물어지는 단계로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었던듯 하다.

작품에 나타난 이 당시의 민속을 보면, 의식주 생활 중 의생활에 있어서는 주로 무명을 재료로 사용하였고 모시나 명주도 일부는 옷감으로 사용한듯하다. 이런 재료들을 이용하여 천릭, 겹옷, 홀옷, 겹바지, 적삼, 속옷, 저고리 등을 만들어 입었으며 버선과 홀이불 등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식생활에 있어서는 쌀, 찹쌀, 보리, 콩, 팥, 녹두, 메밀 등의 곡식을 석용하였으며 참깨, 올무, 마늘 등도 있었고 이들을 이용하여 밥, 팔죽, 떡, 미싯가루 등을 만들어 먹었음이 확인되고 옛도 고아 먹었음을 알 수 있다. 가축으로는 소는 물론 말, 닭, 오리 등이 있었고, 꿩과 노루 등의 야생동물도 석용하였으며, 생선이나 해조류, 어패류 등도 중요한 食物 가운데 하나였으며 각종의 젓갈류나 醬들도 있었고 과일류도 언급되고 있다. 관혼상제에서는 관례를 일부에서나마 행한 기록이 보이고 혼례에 대한 것은 부모의 상중을 피하기 위하여 부모가 위중할 때에 서둘러 혼례를 올린 사례가 보인다. 상례의 경우에는 성복제, 삭제, 발인 등의 절차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가까운 사람이 상을 당하면 치전을 하는 것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던듯하며 상총의 사람들은 남의 상사에 무명 한 필 정도를 부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례에 있어서는 부계적장자 중심의 제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양상이 나타나 있어서 좀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따로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시 풍속으로는 정월 보름, 삼월삼절, 사월파일, 오월단오, 유월유두, 팔월추석 등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데 정월보름과 삼월삼절, 오월단오, 유월유두 등에는 다례가 있었고, 사월파일에는 연등이 있었으며, 한식과 단오 그리고 추석에는 先山에 대한 祭가 있었음을